

「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6. 3. 15. 개정 판 (시행 2016. 3. 1.) → 2023. 4. 3. 개정 판 (시행 2023. 2. 1.)

바뀜 5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62/compare?from=152&to=1429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전 11:47:29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<u>홍보</u> 계획 수립과 시행 업무에 관한 사항을 연구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<u>커뮤니케이션</u> 계획 수립과 시행 업무에 관한 사항을 연구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-04-03>
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대외협력처장, <u>홍보</u> 팀장, 기획팀장, 교수(4)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-02-29>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되고, 서기는 <u>홍보</u> 팀장이 된다.	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, <u>커뮤니케이션</u> 팀장, 기획평가팀장, 교수(4)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-02-29>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이 되고, 서기는 <u>커뮤니케이션</u> 팀장이 된다. <개정 2023-04-03>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. 1. 교내외 <u>홍보</u> 정책 협의 <개정 2016-02-29> 2. 기타 주무부서의 요청 사항에 대한 자문	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. 1. 교내외 <u>커뮤니케이션</u> 정책 협의 <개정 2016-02-29> 2. 기타 주무부서의 요청 사항에 대한 자문
제6조(자료 제공) 각 부서는 당해 부서의 현황, 중요 업무, 중요 행사, 각종 간행물 및 기타 <u>홍보</u> 위원회가 요구하는 <u>홍보</u> 자료를 제공한다.	제6조(자료 제공) 각 부서는 당해 부서의 현황, 중요 업무, 중요 행사, 각종 간행물 및 기타 <u>커뮤니케이션</u>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한다. <개정 2023-04-03>
제7조(주관 부서)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대외협력처 <u>홍보</u> 팀으로 한다.	제7조(주관 부서)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대외국제처 <u>커뮤니케이션</u> 팀으로 한다. <개정 2023-04-03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조문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4조 중 "홍보"를 각각 "커뮤니케이션"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, 커뮤니케이션팀장, 기획평가팀장, 교수(4)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이 되고, 서기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.

제6조 중 "홍보위원회가"를 "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"로 하고, "홍보 자료를 제공한다."를 "자료를 제공한다."로 한다.

제7조 중 "대외협력처 홍보팀으로 한다."를 "대외국제처 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.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